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7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김희정 · 권영진 · 박성민
최수진 · 이종배 · 박준태
김승수 · 김태호 · 김은혜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

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 20조제1항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을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로,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을 “해당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21조, 제2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20조제1항에”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20조제1항에”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2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20조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 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 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 ---해당 사업을----- ----- ----- ----- ----- ----- ----- ----- -----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 기관의 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 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 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④ (생 략)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② (생 략)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u>제20조부터 제22조까지</u>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 3. (생 략) 4. <u>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 9. (생 략)	<u>지하개발사업자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21조, 제22조</u>----- ----- ----- ----- ----- -----. 제51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0조제1항에</u>----- ----- ----- ----- ----- --- 5. ~ 9.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u>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u>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 9.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0조제1항에</u>----- ----- ----- 2의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u>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u>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u>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③·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제20조제1항을</u>----- ----- 2. <u>제20조제2항을</u>----- -----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